

구미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6. 2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- 일반직공무원으로서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중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인상
 - 가급, 나급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각각 30만원씩 인상

3. 참고사항

-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4조
- 행정자치부 자치운영과12512-181('03.6.14)호 -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 수당 인상계획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구미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” 를 “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중 “지방공무원수당규정” 을 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으로 한다.

제2조 각호 외의 부분중 “의료법” 을 「의료법」으로 하고, 동조제2호 중 “전임전문직” 을 “전임계약직”으로 한다.

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2]

전임계약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

등급별 근무연수별	가	급	나	급
5년이상	월1,312,000원 이하		월973,000원 이하	
4년이상	월1,306,000원 이하		월967,000원 이하	
3년이상	월1,300,000원 이하		월961,000원 이하	
2년이상	월1,295,000원 이하		월956,000원 이하	
2년미만	월1,289,000원 이하		월950,000원 이하	

비고 :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개정 사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u>구미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</u>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지방공무원수당 규정</u>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에서 <u>지방공무원</u>(이하“공무원”이라 한다)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의료업무등의 수당) 영 “별표9”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<u>의료법</u> 제2조 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. 1. (생략) 2.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 : 【별표 2】의 지급구분표 [별표2] 전임전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<table> <tr> <th>등급별 근무연수별</th><th>가 급</th><th>나 급</th></tr> <tr> <td>5년이상</td><td>월1,012,000원 이하</td><td>월673,000원 이하</td></tr> <tr> <td>4년이상</td><td>월1,006,000원 이하</td><td>월667,000원 이하</td></tr> <tr> <td>3년이상</td><td>월1,000,000원 이하</td><td>월661,000원 이하</td></tr> <tr> <td>2년이상</td><td>월995,000원 이하</td><td>월656,000원 이하</td></tr> <tr> <td>2년미만</td><td>월989,000원 이하</td><td>월650,000원 이하</td></tr> </table> 비고 :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	등급별 근무연수별	가 급	나 급	5년이상	월1,012,000원 이하	월673,000원 이하	4년이상	월1,006,000원 이하	월667,000원 이하	3년이상	월1,000,000원 이하	월661,000원 이하	2년이상	월995,000원 이하	월656,000원 이하	2년미만	월989,000원 이하	월650,000원 이하	<u>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</u> 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----- ----- ----- ----- 제2조(의료업무등의 수당) ----- ----- 「의료법」 ----- ----- ----- 1. (현행과 같음) 2 .전임계약직 ----- ----- [별표2] 전임계약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<table> <tr> <th>등급별 근무연수별</th><th>가 급</th><th>나 급</th></tr> <tr> <td>5년이상</td><td>월1,312,000원 이하</td><td>월973,000원 이하</td></tr> <tr> <td>4년이상</td><td>월1,306,000원 이하</td><td>월967,000원 이하</td></tr> <tr> <td>3년이상</td><td>월1,300,000원 이하</td><td>월961,000원 이하</td></tr> <tr> <td>2년이상</td><td>월1,295,000원 이하</td><td>월956,000원 이하</td></tr> <tr> <td>2년미만</td><td>월1,289,000원 이하</td><td>월950,000원 이하</td></tr> </table> 비고 :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	등급별 근무연수별	가 급	나 급	5년이상	월1,312,000원 이하	월973,000원 이하	4년이상	월1,306,000원 이하	월967,000원 이하	3년이상	월1,300,000원 이하	월961,000원 이하	2년이상	월1,295,000원 이하	월956,000원 이하	2년미만	월1,289,000원 이하	월950,000원 이하	전임계약직공무원의 처우 개선
등급별 근무연수별	가 급	나 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년이상	월1,012,000원 이하	월673,000원 이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년이상	월1,006,000원 이하	월667,000원 이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년이상	월1,000,000원 이하	월661,000원 이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년이상	월995,000원 이하	월656,000원 이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년미만	월989,000원 이하	월650,000원 이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등급별 근무연수별	가 급	나 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년이상	월1,312,000원 이하	월973,000원 이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년이상	월1,306,000원 이하	월967,000원 이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년이상	월1,300,000원 이하	월961,000원 이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년이상	월1,295,000원 이하	월956,000원 이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년미만	월1,289,000원 이하	월950,000원 이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